



서울 행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0871 취소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redacted]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변 론 종 결 2017. 4. 4.

판 결 선 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161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3. 1. [redacted] 대학교 사회복지과 비정년트랙 조교수로 임용(임용기간: 2016. 2. 29.)되었고, 2012. 2. 1.부터 2014. 12. 31.까지 사회복지과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감사팀은 2015. 11. 12.부터 2015. 11. 26.까지 참가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2015. 12. 28. 참가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인여자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 28.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 ① 참가인은 학과장으로서 관계법령이나 학칙 등을 준수하고 성실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과의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특정학원과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여 정규 교과목 수업을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진행하고 강의도 대학으로부터 위촉받은 시간강사가 아닌 학원의 전문강사가 하도록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 이는 학칙 제35조, 학칙시행세칙 제20조,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 ② 참가인은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도 1학기부터 2014년도 2학기까지 “유선희”를 동 학과 시간강사로 추천하여 동 기간 중 사회복지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케어기술론” 등 5개 과목의 시간강사로 위촉되도록 한 후, 대학이 아닌 학원에



음성출력용바코드

서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고도 대학의 시간표에는 대학내 강의실 등을 지정 명시하여 대학에서 수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탈법적인 수업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학칙 제35조, 학칙시행세칙 제20조,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 ③ 또한 동 강의로 유선희가 아닌 다른 학원 전문강사가 강의하였기 때문에 유선희가 강의한 것으로 표시된 '출강부 및 출석부'가 허위임을 알고도 학과장 확인날인을 하여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241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직무체형 시간에 "간호실습"을 한 학생에 대하여 이를 직무체형으로 인정하도록 담당강사에게 요구하여 동 교과목 성적을 pass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칙시행세칙 제22, 23조,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 ④ 위와 같이 대학을 기망하여 허가된 강사 및 장소가 아닌 수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2학기까지 6개 학기 동안 강사료 12,232,580원을 유선희에게 지급되도록 묵인 방조하여 대학의 학사행정에 큰 환란을 초래하고 대학이 의도하지 않은 지출을 하게 하여 재정적 손실을 주었다.

이는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

※ 징계양정 결정 이유

참가인은 고등교육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학칙 제35조, 학칙시행세칙 제20조,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위반에 해당되며 교육자로서 학과장으로서 직무태만하고 회계질서 문란하고,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는 점이 모두 인정됨에도 김태경 전 학과장과 조교의 책임으로 과실을 전과하고 개선의 점이 충분치 않다.

참가인은 지난 2014년 7회에 걸쳐 슈퍼비전 참가비 부당징수와 회계질서 문란 혐의로{사단법인 놀이문화로부터 심사경비가 필요한 이유로 60만 원을, 종강 컨퍼런스로 뷔페 100인분(1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수하여} 교직원 복무규정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교직원징계규정운영세칙 별표1. 징계양정기준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1.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및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되어 징계형의 3, 4번 해임으로 판단되어 해임으로 의결한다.

다. 원고는 2016. 2. 3. 위 징계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3. 1.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4.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위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취소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 ① 내지 ④는 모두 인정된다.



음성출력용바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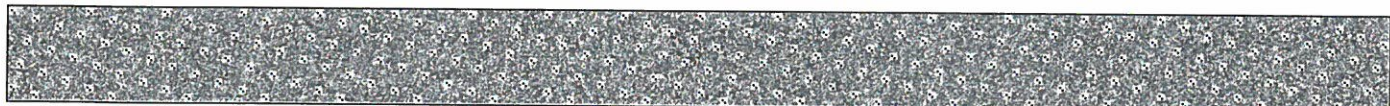
그러나 ① 검찰 조사에서 참가인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 ② 참가인이 간호조무과정과 관련하여 강사료를 착복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는 점, ③ 간호조무과정 수강이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④ 참가인이 학과장으로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학원에서의 수업이 학과 교수들과의 형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간호조무과정 관련 과목은 2012년부터 강의가 이루어지고 학점이 부여되었으므로 원고의 관리·감독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4호증, 제27호증 내지 제29호증, 제35, 3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태경, 조승석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징계처분은 가능하고, 참가인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지만 유설희 및 유설희 운영의 학원이 1억 원 이상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무자격 강사들에 의하여 강의가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학원선택권을 침해한 점, 위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 관하여 다른 교수들이나 학교 측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격증 취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학과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없는 점, 참가인의 행위는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교직원징계규정 운영세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제1의 가항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반성 및 개전의 정이 없고 2014년에도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참가인을 엄중히 징계하여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참가인의 대학교수로서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해임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5, 33, 34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및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가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징계사유 ① 내지 ④는 각 별개의 사유가 아니라 참가인이 대학 측과 협의 없이 정규 교과목 수업을 학원에서 진행하였고, 대학에서 위촉받은 강사가 아닌 학원의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간호실습을 직무체험으로 인정해 주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수업을 운영하였음에도, 대학을 기망하여 위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제대로 강의를 하지 않은 유설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였다는 연관된 사실관계에 기초한다.

원고 측은 참가인의 위 행위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6. 2.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유설희 간호학원과 산학협동협약을 체결할 때 학생들의 수강료 인하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참가인이 위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관련 수업의 개설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부정할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난 바는 없다.

(2)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명의로 2012. 4. 19. 유설희 간호학원과 체결된 산학협동협약서 제1조 제4호는 협력기관의 학교교육 참여(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특정 간호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 강사의 강의를 듣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강의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대학 내에서 진행된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 강의하는 강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강의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일부 실습수업은 그 특성상 시설이 갖추어진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위 학원에 소속된 강사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진행할 능력은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수업시간이나 출결관리 등의 사항은 준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참가인의 잘못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비록 해당 수업의 시간강사로 위촉된 유설희가 직접 강의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이루어진 수업시간에 따라 통상적인 강사료가 지급되었고 학생들에 대한



학원 수강료 할인 금액과 비교하더라도 강사료 지급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해당 과목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수강하였고 학생들로서는 학점인정도 받고 산학협동협약에 따라 자격증 취득 과정의 수강료 할인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학과 학생들이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4) 참가인이 간호실습을 한 학생에 대하여 직무체험으로 인정해 주도록 담당강사에게 요구한 잘못 역시 학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참가인이 사적으로 부정한 동기를 가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놀이문화협회로부터 60만원을 받아 학과운영비로 사용하고 교수 및 학생들을 위해 뷔페 100인분을 제공받았다는 종전 징계사유에 관하여도 개인적 착복이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 피고가 참가인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를 취소한 적이 있다. 다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거나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이나 대학 내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러한 잘못이 반복될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없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종전 징계를 받기 전인 2012년~2014년경 이미 발생하였던 일이 뒤늦게 문제된 것이므로 참가인이 종전 징계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개선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5) [redacted] 대학교의 산학협력처장은 2011년경 사회복지과 학과장이던 김태경에게 자격증의 취득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학원과의 연계가 검토되기도 하였다. 즉 졸업생의 취업지도를 독려하는 분위기에서 학원과 산학협약 등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주는 방안은 참가인이 독단적·예외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이 학과장이 되기 전부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 내에서 이미 장려되던 상황이었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경인여자대학교 교직원징계규정 운영세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갑 제21호증의2)에 의할 때,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항목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위 징계양정 기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강석규



판사

김대원

김대원



판사

최선재

최선재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경인여자대학교 학칙

제35조(수업)

-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 ③ 강의시간표는 수강신청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며, 1교시를 50분으로 한다. 다만, 야간강좌의 경우 45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수업은 08:00부터 22: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경인여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20조(강의시간표)

- ① 강의시간표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개강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수업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단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결정 공고된 강의시간표는 총장의 허가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시간표 공고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간표/강사 변경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출강부)

- ① 교과 담당교수는 각 학과사무실에 비치한 출강부에 반드시 서명하여 출강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출강부에 서명하여 출강표시를 하지 않을 시는 결강으로 인정한다.

제23조(출석부)



음성출력용바

각 교과담당 교수는 교과별 출석부에 해당학기 출석상황을 집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학기 종강이후 출석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인여자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

교직원은 법령, 정관, 학교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경인여자대학교 교원징계규칙

제1조(적용범위)

본 대학소속의 교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징계의결시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형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경인여자대학교 교직원징계규정 운영세칙

제3조(징계의결)

① 징계 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과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끝>



음성출력용바

정본입니다.

2017. 4. 27.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박완식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